

2026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2026년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 한국남동발전 주관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생산성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18일
한국남동발전 상생경영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본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협업기관이 중소기업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I. 사업목적

-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수준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생산성과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급사슬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 제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II. 사업 지원계획

□ 사업 개요

- 제조 현장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 대상 : 제조업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상세

구분	기초 수준 (신규 구축)	고도화 수준 (수준 향상)
사업명	2026 경남형 스마트공장(기초) 구축지원사업	2026 남동발전 스마트공장(고도화) 구축지원사업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수준(레벨1~2)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컨설팅 솔루션, 연동 설비의 최초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1 수준(레벨3) 스마트공장 구축 시스템 고도화, 추가구축 및 연동 - 4IR 기술 적용확대 위한 설비 강화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경남지역 우선 선정 스마트공장 미구축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수준을 도입한 중소기업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별 총 2,280만원 - 정부 지원금 : 680만원 - 남동발전 지원금 : 1,600만원 이내 - 참여기업 자부담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별 총 6,670만원 - 정부지원금 : 2,000만원 - 남동발전 지원금 : 4,000만원 - 참여기업 자부담 : 670만원
규모	8개사	4개사

※ 지원 중소기업 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과제 중도 포기업체 발생 시 後 순위부터 추가선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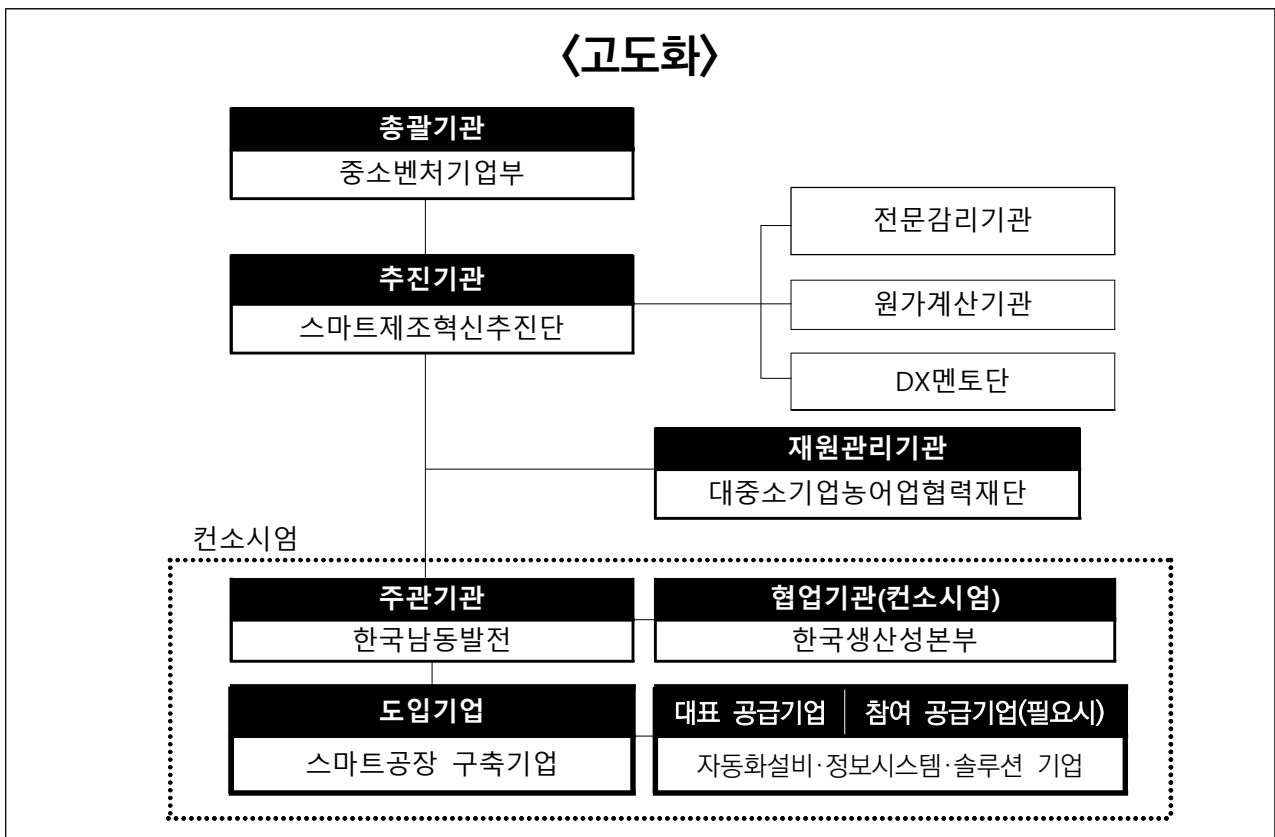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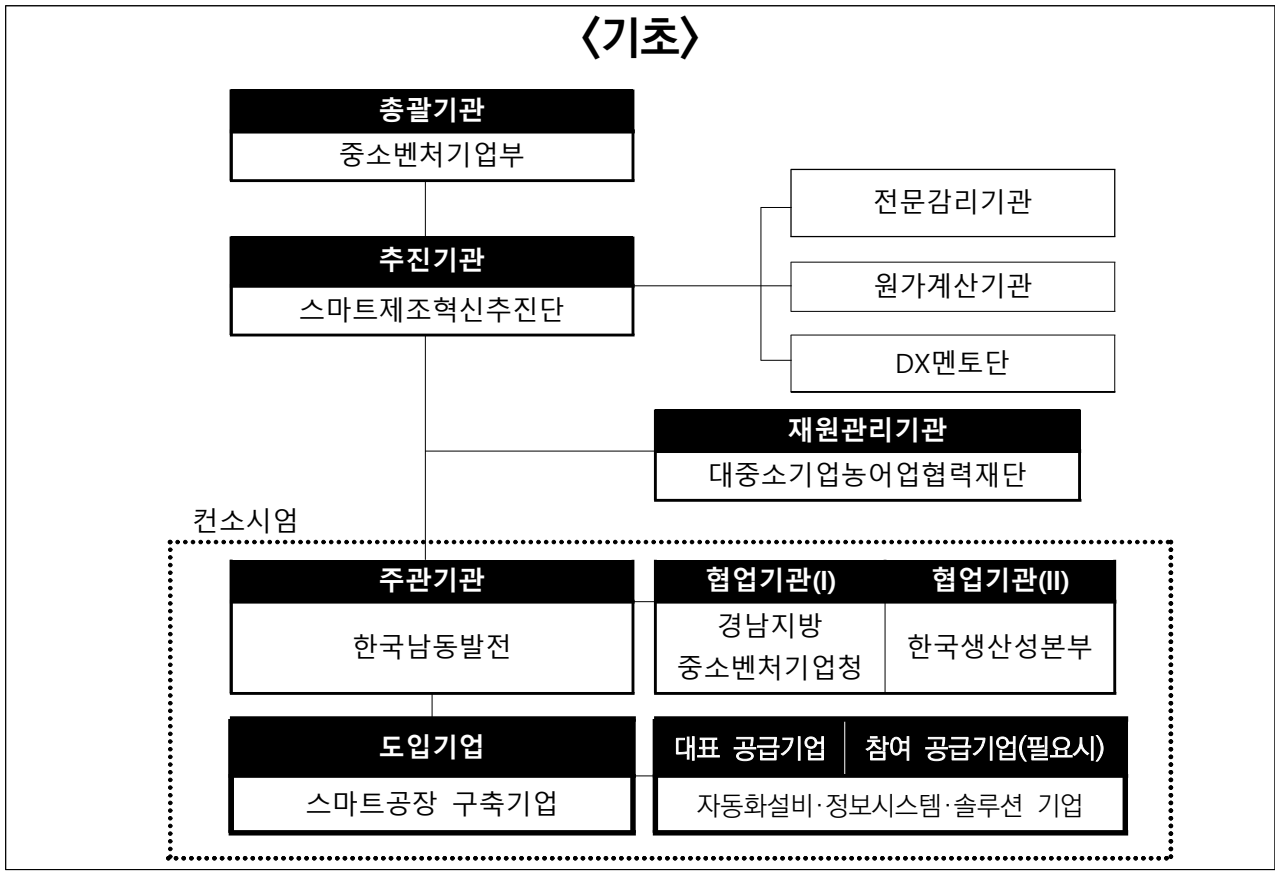
※ 기초 수준 지원은 자부담 없으며, 고도화는 도입기업 자부담 670만원

□ 과제 수행기간 : 협약 후 6개월 이내 (2026년 12월말 이내)

※ 과제수행은 연내에 완료하며, 완료시점에 따라 일부 기업의 비용지급은 '26년 1월에 지급할 수 있음

1) 레벨 1: 부분 표준화 및 데이터관리 / 레벨 2: 생산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 레벨 3: 수집정보 분석 및 제어가능

□ 추진 체계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5월 18일(월) ~ 2026년 5월 29일(금) 13시까지 접수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등(붙임3~9) 작성 후 이메일 송부
 - 이메일 : gravity@koenergy.kr (박수진 차장, ☎070-8898-1916)
zmzmz@koenergy.kr (전민재 대리, ☎070-8898-1919)
 - 접수처 : 한국남동발전 상생경영처 중소기업지원부
-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분	제출 서류 목록	도입기업	대표공급기업
1	참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X
2	사업 추진계획서 및 관련 문서	○	○
3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확인서 유효기간이 사업기간 내에 있어야 함	○	X
4	최근 재무제표('25)	○	X
5	사업자등록증명원	○	X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7	기술보유 ¹⁾ 및 기업 ²⁾ 인증서 1) 기술개발제품 13종 2)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벤처·창업기업, 뿌리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	X
8	정비적격, 유자격 업체, 최근 3개년 ^{'23~'25} 납품실적 증명서 중 1건	○	X
9	개인·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	X
10	청렴 서약서	○	X
11	남동발전 퇴직자 명단	○	X
12	특수관계인 명단	○	X
13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

□ 지원 절차



* 구축 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함

* (집중 A/S기간) 공급기업은 구축완료일로부터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응 및 활용 지원을 위해 6개월간 A/S 서비스 지원 필수

□ 선정 절차

- 대상 : 제조업종 중소기업
- 공고 및 신청/접수 : 주관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 대상 선정 : 한국남동발전 생산기술, 구매조직 연계한 자체 기준에 따른 도입 기업 적격여부 심사
 - 공장 최적화 관점의 자동화, 정보화 과제 우선 선정
 - 생산 정보 연계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과제 우선 선정
 - 성장성 및 원가개선 효과가 큰 기업
 - CEO의 사업 참여 및 개선 의지가 강한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 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 단, 최종점검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주관기관(소속 임직원 포함)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기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정한 부적격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 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운영상 필요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분석·활용을 위해 KAMP**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권장)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기반의 데이터 수집·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저장 가능

*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최대 3년, 소기업은 최대 5년)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

*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1 참고

-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교육 의무 수료

구분	세부 내용
①사업관리교육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❶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❷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2 확인]

- 공급기업은 사업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자동화센서·로봇 등 비솔루션(S/W)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가능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참여(도입)기업에게 있음
-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스마트공장 시스템은 5년간 보유해야 하며, 해외이전 및 타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

III. 문의 및 연락처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문의사항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남동발전 상생경영처	도입기업 모집 관련	박수진 차장	070-8898-1916 gravity@koenergy.kr
협업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사업관리 관련	남주혁 책임전문위원	02-724-1196 jhnam@kpc.or.kr

- 한국남동발전 동반성장 홈페이지 - <https://www.koenergy.kr/support>

붙임

- 붙임1. 소기업 규모 기준
- 붙임2.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붙임3. 참가신청서
- 붙임4. 추진계획서
- 붙임5. 개인·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 붙임6. 청렴서약서
- 붙임7. 퇴직자 명단
- 붙임8. 특수관계인 명단
- 붙임9.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1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도업은 제외한다)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 (교육장소) 집합교육_전국 5개 연수원, 온라인교육_연수원 홈페이지 활용
- (교육기간) 연중 운영(1~12월)
 - * '26년 12월 내 교육을 완료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함
- (교육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
- (교육비용) 무료 또는 유료
-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중소벤처기업-숲) 홈페이지
(<http://ssup.kosmes.or.kr>)를 통해 신청

※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연수원명	전화번호
집합교육 웨비나(Webinar) 장기심화과정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도 안산)	031-490-1472
	호남연수원 (광주)	062-250-3000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41-559-9225
온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031-490-1288

청 령 서 약 서

- 당사가 귀 공사로 제안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과제는 이미 개발을 완료한 기술 또는 제품 및 성과물을 제안하는 등 허위 행위가 아님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귀 공사가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모든 제재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안 과제와 관련된 당사 소요의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귀 공사의 절차에 따라 귀 공사에 권리를 일부 양도하겠습니다.
- 당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수행기관 자체의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할 것을 약속하며 관련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업의 신청 및 평가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귀 공사의 중제 선정심의회와 관련하여 귀 공사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취업 제공 및 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과제신청 철회, 과제선정 취소 등 귀 공사가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모든 제재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기업명 :

○ 대표자 :

(인)

한국남동발전 귀하

붙임 7**퇴직자 명단****재직 중인 한국남동발전 퇴직자 명단**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기준	재직기업 입사 년월일	직위	임·직원 해당여부 (해당없음 기재)
주식회사 A		-	-	-	-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한국남동발전 퇴직자가 연루된 경우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국남동발전은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가중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한국남동발전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기업명 :

○ 대표자 :

(인)

붙임 8**특수관계인 명단****한국남동발전 특수관계인 명단**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기준	재직기업 입사 년월일	직위	비고 (해당없음 기재)
주식회사 A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2조 2(특수관계인 범위) 및 법인세법 제 2조 12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한국남동발전은 제재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한국남동발전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기업명 :

○ 대표자 :

(인)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목적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수집, 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 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여부”, 중소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중소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등에 한함

3. 수집, 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인)